

동 제135 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는 3상 교류 380볼트인 것과 단상 교류 100볼트 또는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 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KSC 8321) 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 제135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3상교류 38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러그 접속기(KS C 8305)를 단상 교류 1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 보험 요율 개정

화재 보험 요율이 일부 개정되어 198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주로 II. 建物規定에서 用語의 定義가 보완되고 工場物件에서 複合構造建物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번의 요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요율 적용에 관한 문제점은 별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율서의 적용상 문제점은 앞으로 본 지부에서 제출된 문제점을 취합하여 보험공사의 유권 해석을 받아 적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문제점을 몇 가지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구조급별 중 1급~3급구조 적용 (요율서 P. 23~P. 24) 에서 외벽의 구조중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이 되는 외벽의 시험 내용이 있어야 하고 기타의 재료를 이 기준에 맞추어 시험을 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신공법에 의해 신재료가 사용된 구조 부분의 급수산정을 위해서도 조속한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애초에 요산회로 부터 요율 개선안을 당협회로 검토 의뢰하여 왔을 때 협회 방재 시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금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것으로, 차기에 반영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2. 내화 구조의 정의 중에서 “조적의 기둥”이 있으나 조적조 기둥의 최소 단면적은 정해져야겠다. 예를 들어 1급 구조의 건물에서 조적조의 내력벽은 30c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하나 벽두께 20cm인 경우는 조적조 기둥과 조적조 보를 설치하더라도 벽자체가 내력벽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둥의 최소 단면적이 정해져야 하겠으며 조적조 보는 무의미하다.

3. 무벽 건물 (요율서 P. 24) 에서 주요 구조부재가 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이고 외벽이 50% 이상인 경우는 1급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층 건물에서 유리벽 적용 건물은 1급과 2급의 평균치를 적용도록 하는 결과는 크게 상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벽 건물에서 1급건물을 적용치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 주택 관리규칙 개정

주택 건설 촉진법 및 공동 주택 관리령의 시행을 위한 공동 주택 관리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건설부령 제408 호로 1986년 9월 23일 공포된 동 규칙이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공동 주택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사업 주체의 주요 기본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일부 연장하며, 주택 관리인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동 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 시설물 중 변전실·고압 가스 시설·소방 시설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 진단 점검 회수를 현행 1회이상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승강기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으로 늘리고 비상 저수 시설 및 우물에 대한 위생 진단을 새로이 실시하도록 함(별표 2).

나.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굴조 공사, 지붕 및 방수 공사와 승강기 설비 공사 등 주요 기본 공사에 대한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별표 3).

다. 공동 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택 관리인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통한 공동 주택 입주자의 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평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인의 주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세대수를, 종전에는 납입 자본금에 따라 4 천 세대 이하부터 2 만 세대 이하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납입 자본금에 따라 5 천 세대 이하부터 5 만 세대 이하까지로 확대함 (별표 4).

安全點檢結果 點檢意見 作成方法 改善

安全點檢結果 點檢意見 作成方法이 변경되었다. 종래에는 점검 후 건물소유자에게 결과 내용을 통보할 때 대형 물건 및 중형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 의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험 요율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리상 필요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형 물건 (광장을 제외한 1,000m²이하 건물, 공동 주택)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만 현장에서 서면 통보하고 기타 사항은 구두로 통보하여 왔다.

그러나 시설이 변동이 없는 경우, 같은 내용의 점검 의견을 재통보하게 되어 기대 효과가 적어지고, 점검 물건수 (특히 대형물건)의 증가로 차등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점검 의견 작성 대상 물건에 조정도 그 필요성이 대부분되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점검의견 작성 대상 물건 (대·중형물건)
 - 4층이상, 주유, 학교, 사설 강습소는 연면적 3,000m² 이상인 것
 - 병원, 호텔, 공연장, 방송 시설, 우내 판매장 (시장 포함), 음식점은 연면적 2,000m² 이상인 것
 - 공장은 연면적 합계 2,000m² 이상인 것
 - 11층 이상 건물 (공동 주택은 제외)
 - 신규 건물
- 2) 작성방법

1) 1회에 한해 시설은 안전점검과 작성시 작성하고

2) 2회부터는

- 면적 변동(증·개축)으로 주요 소방 시설 등이 변동된 경우와
- 주 용도가 변경된 경우만 작성

3) 기타 유의 사항

- 1) 작성 대상 물건이라도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은 작성은 제외할 수 있다.
- 2) 1)의 작성 대상 이외의 물건이라도 화재 위험성이 많아 점검 의견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작성할 수 있다.